

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정세균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97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9. 4. 23.

발의자 : 정세균 · 안규백 · 이춘석

설훈 · 서영교 · 전재수

김진표 · 이상현 · 이후삼

김경협 · 도종환 · 김영주

송옥주 · 안민석 · 신동근

김병욱 · 김민기 · 최재성

이수혁 · 오영훈 · 위성곤

이석현 · 조승래 · 우상호

의원(2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령에 따르면 보유자 및 보유단체는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, 문화재청장은 전수교육을 보조하기 위하여 해당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승기량 등의 요건을 갖춘 사람을 전수교육조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전수교육조교가 전수교육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, 전수교육조교가 전승기량 등의 요건을 갖추고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된다는 점에서 독자적으로 전수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전수교육조교의 명칭을 전승교수로 변경하고, 전승교수가 국가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는 사람이 아닌 전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주체로 규정하는 등 관련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무형문화재 전승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2조 등).

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5호 중 “전수교육조교”를 “전승교수”로, “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는”을 “전수교육을 실시하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9호 중 “전수교육학교가”를 “전승교수, 전수교육학교가”로 한다.

제10조제1항제3호 중 “전수교육조교”를 “전승교수”로 한다.

법률 제16056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“전수교육조교”를 각각 “전승교수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보조하기”를 “실시하기”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전수교육조교”를 “전승교수”로 한다.

제19조의 제목 중 “전수교육조교”를 “전승교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기”를 “전수교육을”로, “전수교육조교를”을 “전수교육을 할 수 있는 전승교수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전수교육조교”를 “전승교수”로 한다.

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“전수교육조교”를 각각 “전승교수”로 한다.

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호 · 제6호 중 “전수교육조교”를 각각 “전승교수”로 하고, 같은 항 제7호 중 “전수교육 또는 그

보조활동을”을 “전수교육을”로 한다.

제22조제7항제2호 중 “전수교육조교”를 “전승교수”로 한다.

제25조제2항 본문 중 “보유자 및 보유단체는”을 “보유자, 보유단체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전승교수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보유자 및 보유단체가”를 “보유자, 보유단체 또는 전승교수가”로, “경비(전수교육조교의 전수교육 보조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)”를 “경비”로 한다.

제32조제3항 중 “전수교육조교”를 각각 “전승교수”로 한다.

제33조제3호 중 “전수교육조교”를 “전승교수”로 한다.

제35조 전단 중 “전수교육조교”를 “전승교수”로 한다.

제51조 중 “전수교육조교”를 각각 “전승교수”로 한다.

제53조제1항 중 “전수교육조교”를 “전승교수”로 한다.

제57조제2호 중 “전수교육조교”를 “전승교수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전수교육조교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정받은 전수교육조교는 이 법에 따른 전승교수로 본다.

제3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(이 법 시행 전

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)에서 “전수교육조교”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“전승교수”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.
1. ~ 4. (생 략) 5. “ <u>전수교육조교</u> ”란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정되어 <u>보유자</u> 또는 <u>보유단체</u> 의 전수교육을 <u>보조하는</u> 사람을 말한다.	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-- <u>전승교수</u> ----- ----- <u>전수교육을</u> <u>실시하는</u> -----.
6. ~ 8. (생 략) 9. “전수교육”이란 제25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보유자 및 보유단체, <u>전수교육학교가</u>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.	6. ~ 8. (현행과 같음) 9. ----- ----- ----- <u>전승교수, 전수교육</u> <u>학교가</u> ----- --.
10. · 11. (생 략) 제10조(위원회의 심의사항 등) ① 위원회는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	10. · 11. (현행과 같음) 제10조(위원회의 심의사항 등) ① ----- ----- -----.
1. · 2. (생 략) 3.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, 보유단체, 명예보유자 또는 <u>전수교육조교</u> 의 인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	1. · 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 ----- <u>전</u> <u>승교수</u> ----- -----
4. ~ 6. (생 략)	4. ~ 6. (현행과 같음)

<p>② ~ ④ (생 략)</p> <p>법률 제16056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홍에 관한 법률</p> <p>일부개정법률</p> <p>제18조(명예보유자의 인정) ① (생 략)</p> <p>②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<u>전수교육조교</u>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형의 수준과 전승활동 업적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국가무형문화재 <u>전수교육조교</u>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되면 그 때부터 <u>전수교육조교</u>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.</p> <p>1. 전수교육을 정상적으로 <u>보조하기</u> 어려운 경우</p> <p>2. <u>전수교육조교</u>가 신청하는 경우</p> <p>③ ~ ④ (생 략)</p> <p>제19조(<u>전수교육조교의 인정</u>)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<u>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기</u> 위하여 이</p>	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법률 제16056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홍에 관한 법률</p> <p>일부개정법률</p> <p>제18조(명예보유자의 인정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<u>전승교수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. -----<u>전승교수</u>----- -----<u>전승교수</u>-----.</p> <p>1. -----<u>실시하기</u>----- 2. <u>전승교수</u>----- ----</p> <p>③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9조(<u>전승교수의 인정</u>) ① ----- ----- ---<u>전수교육을</u>----- -----</p>
--	---

<p>수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<u>전수교육조교</u>를 인정할 수 있다.</p> <p>② <u>전수교육조교</u>의 인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 <p>제20조(인정의 고시 및 통지 등)</p> <p>①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, 보유단체, 명예보유자 또는 <u>전수교육조교</u>를 인정하면 그 취지와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, 지체 없이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, 보유단체, 명예보유자 또는 <u>전수교육조교</u>에게 알려야 한다.</p> <p>②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, 보유단체, 명예보유자 또는 <u>전수교육조교</u>를 인정하면 그 보유자, 보유단체, 명예보유자 또는 <u>전수교육조교</u>에게 해당 인정서를 내주어야 한다.</p> <p>③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, 보유단체, 명예보유자 또는 <u>전수교육조교</u>의 인정은 그 인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을</p>	<p>-----</p> <p>-----<u>전수교육을 할 수 있는 전승교수를</u>-----.</p> <p>② <u>전승교수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제20조(인정의 고시 및 통지 등)</p> <p>①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u>전승교수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u>전승교수</u>-----.</p> <p>②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u>전승교수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u>전승교수</u>-----.</p> <p>③ -----</p> <p>-----<u>전</u></p> <p>-----<u>승교수</u>-----</p> <p>-----</p>
--	--

<p>8. · 9. (생 략)</p> <p>② (생 략)</p> <p>제22조(정기조사 등) ① ~ ⑥ (생 략)</p> <p>⑦ 문화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·재조사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반영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생 략) 2.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, 보유단체, 명예보유자 및 <u>전수교육조교</u>의 인정과 그 해제 3. (생 략) <p>⑧ (생 략)</p> <p>제25조(국가무형문화재의 보호·육성) ① (생 략)</p> <p>②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제17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<u>보유자</u> 및 <u>보유단체</u>는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③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<u>보유자</u> 및 <u>보유단체</u>가 실시하는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(전수</p>	<p>8. · 9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2조(정기조사 등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⑦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-----전 승교수----- 3. (현행과 같음) <p>⑧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5조(국가무형문화재의 보호·육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보유자, 보유단체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전승교수는-----.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③ -----보 유자, 보유단체 또는 전승교수 가-----경비---</p>
--	---

<p><u>교육조교의 전수교육 보조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)</u> 및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④ ~ ⑥ (생 략)</p> <p>제32조(시·도무형문화재 등의 지정 등) ① · ② (생 략)</p> <p>③ 시·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, 보유단체, <u>전수교육조교</u>가 국가 무형문화재의 보유자, 보유단체, <u>전수교육조교</u>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시·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, 보유단체, <u>전수교육조교</u>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.</p> <p>④ ~ ⑥ (생 략)</p> <p>제33조(보고 사항) 시·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1. · 2. (생 략)</p> <p>3. 시·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, 보유단체, 명예보유자 또는 <u>전수교육조교</u>의 인정 및 해제</p> <p>4. (생 략)</p>	<p>-----.</p> <p>④ ~ 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2조(시·도무형문화재 등의 지정 등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</p> <p>----- <u>전승교수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-- <u>전승교수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전승교수</u> -----</p> <p>-----.</p> <p>④ ~ 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3조(보고 사항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.</p> <p>1. ·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<u>전승교수</u> -----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
--	---

<p>문화재”로 본다.</p> <p>제51조(유사명칭 사용의 금지) 이 법에 따른 보유자, 보유단체, 명예보유자, <u>전수교육조교</u> 및 이수자가 아닌 자는 보유자, 보유단체, 명예보유자, <u>전수교육조교</u>, 이수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</p> <p>제53조(관계 전문가 등의 조사)</p> <p>① 제12조의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제13조의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과 제17조의 보유자, 보유단체의 인정 및 제18조의 명예보유자의 인정, 제19조의 <u>전수교육조교</u>의 인정을 하는 경우 위원회의 해당 분야의 위원이나 전문위원 또는 해당 무형문화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57조(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</p>	<p>-----.</p> <p>제51조(유사명칭 사용의 금지) -----</p> <p>-----<u>전승교수</u>-----</p> <p>-----<u>전승교수</u>-----</p> <p>-----.</p> <p>제53조(관계 전문가 등의 조사)</p> <p>①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u>전승교수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7조(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) -----</p>
---	---

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	----- 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유자, 보유단체, 명예보유자 또는 <u>전수교육조교</u> 로 인정된 사람	2. ----- ----- ----- <u>전승교수</u> -----
3.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